



APEC Engineer의 相互協定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APEC Engineer

이 협정은 각국의 제도를 신뢰하며 상호승인을 총괄하는 APEC Engineer 조정 위원회를 APEC HRD 밑에 두고 각국의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모니터링(Monitoring)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상호승인을 촉진한다.
"실질적동등성협정"은 각국 Engineer단체의 참여로 선행발족하고 그후 정부간의 2개국간 협정으로서 "상호면제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許 填*
Huh, Ginn

1. 머리말

의에서 기술사 자격자에 대한 회원 상호합의를
마치고 10월 회의에서 정식 발족절차를 받게된
APEC Engineer의 탄생은 먼저 今年 7月 회
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A time table for the accomplishment of each component

Activity	Timeframe
Establishment of project Steering Committee and agreement on project governance arrangements(out-of-session)	July 1998
Agreement to establish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	July 1998
Establishment of Monitoring Committee in each participating member economy	August 1998 and ongoing
Monitoring Committee preparation and circulation of thier draft APEC Engineer assessment statements	From September 1998
Inaugural APEC Engineer Coordinating Committee meeting	Late October 1998
Project Steering Committee meeting	Late October 1998
Establishment of decentralised APEC Engineer Resister	From November 1998-ongoing
Circulation of paper on APEC Engineer register to regulatory/licensing authorities	December 1998
Workshop to consider draft regulatory/licensing Mutual Exemption Framework for APEC Engineers	February 1999
Steering Committee meeting to review progress on APEC Engineer Register and related measures to increase engineer mobility and prepare report for HRD WG	April 1999

The number of APEC member economies that will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Please indicate the names of member economies participating in each component of the project as set out in (12)
To be determined.

*화약류관리기술사, 미국기술사(토목), 한국기술사봉사단장, 동남아태평양 공학회연합(FEISEAP) 부회장.

제 1부

Australia,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preceding stage of the project (Stage 2A). Hong Kong, China attended Stage 2A project meetings as an observer.

APEC 회원국

AUSTRALIA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and The Institute of Engineers, Australia
HONG KONG, CHINA (OBSERVER)	Education & Training Works Bureau, the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Institute of Engineers (HKIE)
INDONESIA	Persatuan Insinyur Indonesia (PII) Badan Akreditasi Nasional (BAN),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JAPAN	Japan Consulting Engineers Association (JCEA)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 Building Engineers Associates, Tokyo Society of Architects & Building Engineers, Science & Technology Agency (STA), and Japan Civil Engineering Consultants Associ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Korea Ministry of Labour
MALAYSIA	Board of Engineers, Malaysia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Malaysia
NEW ZEALAND	The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and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PAPUA NEW GUINEA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Philippine Technological Council (PTC),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 and Technical Panel for Engineering, Architecture and Maritime Education (TPEAME)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AILAND	The Engineering Institute of Thailand under H.M the King's Patronage (E.I.T.), and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Engineering Practice (USCIEP), with assistance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 (NCEES), the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 and th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PE)

2. 연혁

APEC HRD^{†1)}가 APEC Engineer 상호승인 Project를 '96년 5월부터 시작 착수한지 만 19개 월 만인 '97년 11月 Melbourne 개최 제3회 운영 회의에서 참가국간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 나라의 대표는 노동부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참가가 없어 회원국간에 소외되어 왔으나 다행히도 일본의 기술사자격제도가 우리

나라와 유사하여 우리로서는 漁父之利를 얻게 되었다. 또한 上記 政府상대 회의에 비해서 민간기구인 동남아태평양 공학회연합(FEISEAP)에서 한국기술사회가 한국대표로 계속 참가하고 있는 관계로 간접적으로나마 일본기술사회 다끼(高城) 이사(APEC HRD 일본전담대표)와 협조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Project의 당초 계기는 '95年 大阪의 APEC 각료회의에서 발의된 것이다.

주 1)

HRD(1)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PEC 내의 분과위원회임.

장차 APEC의 발전을 위해서 域內의 적절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Engineer의 域內에서의 자유이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Project 추진을 호주정부가 '96년 1월 APEC의 하부기구인 인재개발 Working Group(APEC HRD WG)에서 APEC 기술자 상호승인 Project 건을 주관하기로 했다. 호주의 제안에는 호주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5,000명의 Engineer를 주로 동남아세아 및 동구로부터 받아 드리고 있으며 또한 자국의 Engineer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승인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Project의 목적은 첫째, 域內에 있는 우선 기술사의 자격인정과 상호승인에 대해서 적절한 수단을 강구 이를 촉진하는 것이며 둘째, 域內에 있는 각 기술단체간의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96년 5월 시드니(Sydney)에서 정부 및 기술관련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운영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사무국은 호주공학회연합(IE Aust)이 맡기로 했다.

이 Project의 참가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싱가포르 등 12개 국으로 APEC가입국 '97년 현재 18개국의 약 70%이다.

'97년 11월까지 이 Project는 5회에 걸친 회의 끝에 APEC Engineer의 개념확정과 승인협정의 초안을 작성 '98년 7월에 개최되는 APEC HRD 회의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게 되면 APEC Engineer 협정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① 회원국가의 자격현황('96년 12월 ~ '97년

2월)

상호승인의 틀을 잡기 위해서 참가 각국의 Engineer 교육, 기술사의 자격심사, 기준, 시험, 등록, 기술협회, 계속교육(보수교육)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합화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술사, 건축사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국의 Engineer 교육제도, 자격시험제도는 그들의 역사적 경위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호승인에 필요로 하는 공통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기본요소(전문가회의 Pari, '97년 3월)

다음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내용의 토의를 가졌다.

- Engineer 교육내용 : Engineering 교육수료 자를 Consulting 직업 전에 인정
- 技術士有經歷 :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상호인정
- 자격취득 후의 계속교육(보수교육)의 필요성 : 기술능력유지에 필요
- 전체 시스템으로서 품질보증 : 각국 시스템의 투명성의 확보
- 세계표준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 : Eu, NAFTA 경제권과도 상호승인이 가능한 기준설정
- Engineer로서 능력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 동등성협정과 이를 위한 자격면허 교부의 절차간략화를 위한 상호면제협정의 이중구조의 협정적용

③ Engineering 교육의 품질보증

(운영회의 ; Melbourne '97년 6월)

Engineering 교육의 인가는 정부문교부에서 승인(Rocognition)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외 3

기관에서 인정(Accreditation)하기도 하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유효하기로 하였다.

3. APEC Engineer의 개념(Manila '97년 8월)

Manila Work Shop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것을 정리 검증을 거쳐 각국이 참가 가능한 상호승인의 안을 토의하였다. APEC Engineer의 개념규정은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하는 Engineer는 경험을 쌓고 자기판단으로 업무(Consultants Business)를 수행할 수 있는 Engineer」 등으로 하며 각국의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국에는 APEC Engineer의 심사, 등록하는 기관을 둔다.
- ② APEC Engineer 등록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인정 또는 승인된 Engineering 과정을 수료 한 자
 - 자기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당국의 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자
 - Engineering 과정 수료 후 적어도 7년간의 실무경험을 가질 것
 - 上記 7년간 중 책임 있는 업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 계속적인 전문능력개발이 만족할 만한 Level을 유지해야 한다.
 - 他國 근무시 自國과 같이 그 나라 행동규범 및 직업논리를 준수해야 한다.

4. APEC Engineer의 Framework (운영회의 Sydney '97년 11월)

이전하기 위해서는 APEC Engineer Framework 을 토의 채택했다.

이 협정은 각국의 제도를 신뢰하며 상호승인을 총괄하는 APEC Engineer 조정 위원회를 APEC HRD 밑에 둔다. 그리하여 각국의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Monitoring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상호승인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금후 기술자의 기술적 능력을 상호 승인하는 다국간의 협정이다. “실질적동등성협정”은 각국 Engineer 단체의 참여로 실행발족하고 그후 정부 간의 2개국간 협정으로서 “상호면제협정”이 체결 될 것으로 보인다.

5. 금후의 과정

금년 7월 APEC HRD 회의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APEC Engineer 협정이 확정 후 발족하게 된다.

이 상호승인 Project에 대해서는 일본의 기술 사제도가 우리 나라와 유사한 점을 감안 필자가 한국기술사회를 대표하여 계속 참가하고 있는 NGO, FEISEAP 회의에서 일본 대표와 협조하여 Framework 작성에 있어서 우리의 案이 많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그후 운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Engineer의 자유이동을 위한 상호승인 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Infrastructure)의 정비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

국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규범, 윤리규정을 포함한 기술사시험제도를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

(원고 접수일 1998. 4. 7)

APEC Engineer의 개념을 상호승인협정으로